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18 선고 2017가단82704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 고 1. 주식회사 A

변론 종결 2018. 9. 20

판결 선고 2018. 10. 18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,972,602원 및 그중 100,000,000원에 대하여 2017.8.25.부터 2018. 1. 10.까지는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A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과 사 이에 다음과 같은 이행(지급)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.

- 피보험자 :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- 보험가입금액 : 100,000,000- 보험기간 : 2014. 9. 25. -

2015. 9. 24.- 보증내용 : 피고 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INPAY서비스

이용계약(신용카드가맹점,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대행거 | 약)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- 연체이율 :
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는 연
12%

나. 피고 회사의 INPAY서비스 이용계약 위반으로 보험사고 발생하였다.

원고는 2017. 5. 26.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00,000,00원을 지급하였다, 2017. 8. 24.까지
지연손해금은 1,972,602원이다.

[인정증거 피고 회사 : 공시송달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피고 B : 다툼 없는 사실, 갑1내지
4, 증인 C의 서면증언, 변론전체의 취지

2. 판단

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01, 972, 602원 및 그 중원금100,000,000원에
대하여 2017. 8. 25.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8. 1. 10.까지는 약정이율 연 12%, 그
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
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.

판사 남인수